



# 2019년도 조합원 단체상해보험 지원 사업안내

## 01 사업개요

조합원사 임직원(대표자 포함)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 
단체상해보험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

## 02 지원내용

단체상해보험 가입비용 100%지원

## 단체상해보험이란?

조합원사 임직원이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사고(업무상 또는 비업무상)를 당한 경우, 사망, 후유장애, 상해입원의료비 또는 상해입원일당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.

# 상품 및 보상안내

## 01 보상하는 손해

구분	기본담보	선택담보	
		선택형(1)	선택형(2)
담보명	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	상해입원일당	상해입원의료비
가입금액	1억원	3만원	2천만원
지급사유	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	상해로 인한 입원시 1일당 1일당 지급	상해로 인한 입원시 실비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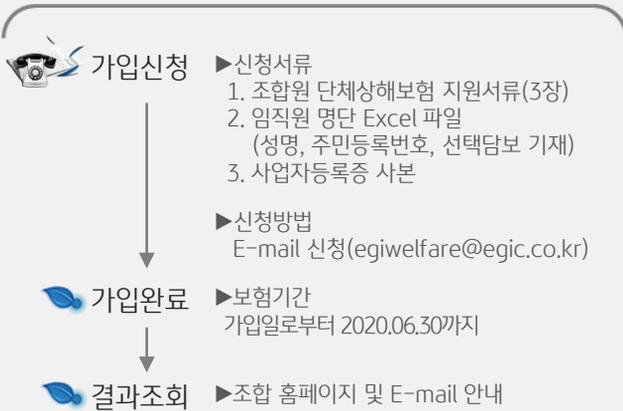
- \*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
- \*상해 입원일당은 입원 1일부터 지급되며, 180일 한도로 지급, 개인 및 단체 실비보험 등과 중복가능
- \*상해 입원의료비는 실손의료비로 개인 및 단체 실비보험 등과 중복보상 불가(비례보상)  
 - 2017년 4월 실손의료비 제도 개정에 따라, 비급여 도수치료, 비급여 주사료, 비급여 MRI진단비는 보상제외

## 02 보상사례

- ➔ A조합원사 직원이 주말에 등산 중 추락해 척추골절 등 상해사고 발생하여 60일간 입원치료 및 척추장해로 30% 장해지급을 판정 받음
  - 기본담보 : 상해후유장해는 총 가입금액에 장해지급율을 반영하며 해당 사례의 경우 3천만원이 지급 (가입금액 1억원 X 30%)
  - 선택형(1) : 상해입원일당은 입원한 1일당 3만원씩 보상이 가능하며, 총 180만원 지급(3만원x60일), 타 보험과 중복보상 가능
  - 선택형(2) : 상해입원의료비는 실비로 입원기간 중 치료를 위해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 중 90%를 실비보상(급여항목의 90%, 비급여항목의 80%), 단 다른 실비보험과 중복불가(비례보상)
- \* 위 산출내용은 예시이므로 실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## 03 가입 및 보상처리절차

### 가입절차



### 보상절차

